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안내문 재증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안내

안녕하십니까?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근로자 수, 업종 등이 아래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라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귀 법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를 2월 28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형①의 경우 2017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예비 안내하는 것이므로 귀 법인이 2018 사업연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유형① 또는 ②]

[유형①] ㉠~㉣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규모 법인		[유형②] 법인전환 기업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지배 주주 및 특수 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법인 설립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인전환한 후 3년 이내인 경우 그 법인 * '18.2.13.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 소득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	

※ 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제외

-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기한** : 2월 28일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선임 신고' 입력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법인) 우측 '인터넷신청' 클릭

**세 무 서 장 (관인생략)**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를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성실신고확인제 안내

## 성실신고확인제란?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신고기한은?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를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자(세무대리인)는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지?

- 사업장 현황, 주요 사업내역, 수입금액 검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에 따른 정규증빙 수취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혜택은?

- 성실신고 확인을 위해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미이행시 불이익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법인세액은 제외)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책임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를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 성실신고지원 → 법인세 → 성실신고확인제 안내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